

감 사 보 고 서

학교법인 영광학원 이사장 귀하

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영광학원의 2017회계연도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및 2018년 2월 28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 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학교법인 영광학원의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은 적절하며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학교법인 영광학원의 2018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적된 사항 : 별첨

2018. 5. .

학 교 법 인 영 광 학 원

감사 : 조 유 제



감사 : 공인회계사 안 진 수



피감사자(임회인)

직명 사무국장

성명 박상룡



지 적 사 항	내 용	처 분 지 시
<p>1. 대구사이버대학교 단독교사 확보 미이행</p>	<p>학교법인 영광학원은 2013.05.13. ~ 2013.07.05.의 기간 동안 19개 원격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감사원의 '사이버대학 운영실태' 감사와 교육부가 2015.09.16. ~ 2015.09.23.의 기간 동안 실시한 회계부분감사에서 대구사이버대 교사를 확보하도록 지적을 받았고, 2017.06.28. ~ 2017.06.30.의 기간 동안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실시한 '2017년 예·결산 및 기본재산 실태점검 항목별 점검'에서 대구사이버대 교사의 적절한 확보를 통한 법인기본금 계상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받은 바 있는데,</p> <p>학교법인 영광학원은 '회계부분감사 처분에 대한 이행보고서 제출 및 처분사항 이행 유보 요청(영광법 제767호, 2016. 1.28.)'에서 대구대학교 경산캠퍼스 내 (구)건설관 4,953.72㎡을 확보하여 대구사이버대 교사로 제공하고 (구)건설관 감정평가액에 상당하는 가치의 법인 수익용기본재산 토지를 대구대 교비회계로 보전해 주고자 한다고 교육부에 보고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제577회 이사회(2016.06.21.)에서 '기본재산 용도변경 및 교환의 건'을 의결하고 2016.08.17.에 '기본재산 용도변경 및 교환 허가 신청'을 교육부에 올렸으나 수익용 기본재산의 감소분에 대한 보전계획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 받았으며, 현재까지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p> <p>향후 조치사항 미이행으로 인해 대구사이버대학교가 인가취소 또는 행정제재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수익용기본재산과 대구대학교의 교육용 기본재산을 용도변경할 경우 수익용기본재산의 감소분을 보전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기존의 방안 외에 새로운 확보 방안을 검토하여 대구사이버대학교의 교사를 확보하여야 할 것임.</p>	<p>[통보]</p> <p>법인에서는 대구사이버대학교의 단독교사를 확보를 위한 기존 계획을 보완하거나 다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p>

감 사 보 고 서

학교법인 영광학원 이사장 귀하

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사이버대학교의 2017회계연도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및 2018년 2월 28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 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구사이버대학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은 적절하며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대구사이버대학교의 2018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적된 사항 : 별첨

2018. . .

학 교 법 인 영 광 학 원

감사 : 조 유 제

감사 : 공인회계사 안 진 수

피감사자(임회인)

직명 대구사이버대학교총장 직무대행 기획조정실장

성명 김 영 걸



지 적 사 항	내 용	처 분 지 시
<p>1. 신규 지역학습관 설치 사업 철저</p>	<p>대구사이버대학교는 지난 2017.11.22. 개최된 제 590회 이사회에서 영남권내 학생 점유율 제고와 현 대구 학습관의 문제점 해결 및 남부지역 학습관 일원화 등의 사유로 부산·울산·경남·동대구역 부근에 지역학습관을 설치하는 ‘대구사이버대학교 지역학습관 설치의 건’을 승인받았음.</p> <p>지역학습관과 관련하여 지난 2016.06.28.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487-7번지 태광빌딩(토지 417.9㎡, 건물 1,573.63㎡, 지하1층/지상7층)을 39억원(부가세별도)에 매입하여 서울학습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선례가 있는데,</p> <p>관할청의 해석에 따르면 교육용기본재산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제6조제1항의 규정을 광의로 해석하여 학생들의 편익을 위한 후생복지 시설 등에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는데, 서울학습관 건물의 취득 시 1층, 2층, 3층, 6층이 임차인들에게 임대되고 있어 부득이 기존계약을 승계하였으나 현재는 기존 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유지·관리 비용 및 기회비용 등의 사유로 새로운 계약을 통해 1~3층을 수익용으로 임대코자 하는 상황으로, 이는 교육용기본재산의 수익사업 활용을 금지하는 관할청의 해석에 위배소지가 있는 위험이 있는 바,</p> <p>향후 신규 지역학습관의 설치를 위한 건물 매입은 사립학교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취득 절차를 준수함은 물론 교육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건전하게 관리하고 관할청의 해석에 위배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임.</p>	<p>[권고]</p> <p>학교의 장은 관계법령 및 관할청의 지침에 위배되지 않도록 신규 지역학습관 설치를 신중하게 검토할 것.</p>